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서병우*, 문승권**

신흥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Policy Improvement of Tax-Aid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and Small & Medium Firms

Byung-Woo Seo*, Seung-Kwon Moon**

Dept. of Tax Accounting of Shinheung College*

Chief of Dasan Management Information Research Ins.**

요약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벤처기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세금감면, 세액공제, 유효성

abstract The 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national growth and heightening efficiency through the creativity economy. This study focus on the effectiveness(difference of the tax bearance) of tax-aid system(tax-reduction and tax-deduction) for the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what had been recorded to the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of Korcham(venture firms), DB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from 2010 to 2012, and opened information of the KOSDAQ Associ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exists differences in the tax bearance rate between the tax-aided corporation and the tax-naoaided corporation through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econdly, Venture firms were investigated to bear low tax-bearance rate in contrast to Small & Medium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ional tax-aided system is effective, and can be led to another new politics alternatives.

Key Words : Venture Firms, Small & Medium Firms, Tax-Aid Systems, Tax Reduction, Tax deduction, Effectiveness

Received 14 January 2014, Revised 14 February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Seung-Kwon Moon(Institute of Dasan Management & Information Research)
Email: skmoon38@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국가경제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은 지속적 성장의 기반이 되므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정책을 실현하는 상황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벤처기업 육성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 노력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거래소시장기업에 비해 IT 업종 등 신기술산업 위주로 청년창업가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기업이 침체기 상태에 있어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강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조세지원제도로써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국가경제의 현안 이슈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강화하며,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벤처기업 보다는 거래소시장기업 위주로 조세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벤처기업의 이윤 창출이나 성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극히 드물다. 김진수·김재진(2002)은 벤처기업의 이윤이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조세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기업인이 우선 조세혜택 여부만을 판단하고 사업에 참여함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정책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자의적인 구분기준에 따라 그룹화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을 일반중소제조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분류한 후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그 실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별적인 조세지원의 대상인 벤처기업이 받는 조세지원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경영 활성화를 위해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세법상 특례규정이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유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 정의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즉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한다. L. Bollinger, K. Hope, J.M. Utterback은 소수의 핵심 기술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기본 동기로 하여 설립한 업체, Cooper는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회사로 정의하였다.

벤처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은 독립 중소기업으로서 독특한 고유기술, 첨단기술 서비스 등 지식과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를 시행령이 정한 근로자수 기준 및 자산총액기준 이하로 정함으로써 양적 정의를 우선하고 있다.

둘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여 질적 정의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2.2 벤처기업 현황 및 요건

1999년 말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수는 4,934개로 이들 대부분이 신생 벤처기업으로 1년간 13배의 성장을 보인 KOSDAQ의 급팽창과 벤처캐피털의 양적 증가가 그 원인이 되었다.

벤처기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29,104개로 유형별로는 벤처투자기업 701개, 연구개발기업 1,476개, 기술평가보증기업 25,371개, 기술평가대출기업 1,496개, 예비벤처기업 60개로 분포되어 있다. 이 중 매출액 1조 이상의 벤처기업도 5개를 배출하였다. 또한 2012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2.9%로 대기업 1.1%, 중소기업 0.7%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벤처법 제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어 공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유형 1(벤처투자)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

둘째, 유형 2(연구개발)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기업으로서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셋째, 유형 3(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하고,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 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등이다.

넷째, 유형 4(예비벤처)는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서,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2.3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는 조세정책상 어느 특정한 산업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세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측면에서 우대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경제의 운용상 공평과세보다 오히려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단기 경기조절 또는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창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거나 간접적으로 조세지원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세지원제도에는 그 지원 방법에 따라 직접지원제도의인 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비과세, 간접지원 방식인 준비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있어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조세지원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조세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중소기업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벤처지원정책 중 세제면의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2015. 12. 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다.

둘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하다.

셋째,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넷째,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다섯째,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4 선행연구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과 조세감면비율 등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Zimmerman 1983 ; 김동훈 2002)가 있다. 또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변경에 의한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이만우의 2000)가 있다.

Rosacker and Metcalf(1993)는 미국 연방법인세법에 투자세액공제(ITC)의 제정, 세액공제율의 인상, 세법의 폐지 등의 조세정책에 대해 ITC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안숙찬(1996)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와 규모,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연구개발투자비율, 수출비율, 이익증가율 등의 기업 특성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채비율, 연구개발투자비용은 조세부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본집약도, 수출비율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근·이귀선(2002)은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이들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실제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어떤 기업들이 조세혜택을 받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998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등록 이전보다 등록 후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벤처 및 중소기업 여부가 코스닥 등록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일반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비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혁준 외(2006)는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 및 비중소기업에서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은 다른 기업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조세부담에 있어서 비중소기업, 비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순으로 낮아짐을 증명하였다.

이형수와 김갑수(2010)은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는지와 창업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더욱 많은 조세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t-검증의 결과, 일반적으로 창업벤처기업이 기타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조세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지만, 내재적 조세의 존재여부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창업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조세감면 등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서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려는 조세정책의 목표 달성여부의 파악은 한계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부담율의 차이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정책적 접근을 위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그룹 사이의 조세부담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 후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간의 조세부담율의 차이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1.1 세액공제제도의 유효성

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잠재력,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가 유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납부세액의 계산으로 분류되는데, 각 항목들은 개별기업의 조세부담액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는 이들 항목 중에서 특히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항목들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혜택여부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 간의 조세부담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2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간의 세액공제제도의 유효성

국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하며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신기술 등으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실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법인세의 경우 보통 50% 정도의 감면을 받으므로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조세부담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조세부담율에 차이가 있고, 조세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것이다.

연구가설 2 :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간의 조세부담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을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표본기업에 대하여 연도별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간에 조세부담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가 유효성이 있는 것이며, 차이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로 인하여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부담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즉 벤처기업은 실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의 경우 50% 정도 감면 받는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벤처기업간 조세부담율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고 조세정책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둘째,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별로 분석을 한다.

셋째,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율을 분석한다.

위와 같은 분석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변수는 조세부담율이다. 이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하며, 기타 변수로서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 유형별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3.3.1 조세부담율

조세부담율은 다음의 식과 같이 조세부담능력에 대한 조세부담액에 비율을 의미한다.

$$\text{조세부담율} = \text{조세부담액} \div \text{조세부담능력}$$

본 연구에서 조세부담능력은 과세전소득을 사용하였고, 조세부담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부담액을 사용하였다.

과세소득과 법인세부담액의 선정 이유와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전소득

법인의 조세부담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과세대상소득을 조세부담능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각 이익항목과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과 각 사업연도소득 모두 법인의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법인의 조세부담능력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조세부담액

법인의 조세부담액은 법인세부담액이란 명칭으로서 법인세등명세서에 나타난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에 부가되어 계산되는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법인세등명세서에서 산출된 부담세액을 사용한 근거는 법인세비용등명세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외부감사를 받는 신뢰성이 있는 자료이며, 그 세액이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금액이므로 법인의 조세부담액으로서는 다른 추정치나 보고서의 수치보다 더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부담액을 산출하고자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된 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정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3.4 표본기업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기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벤처기업은 총 547개이며, 일반중소기업은 615개이다. 표본에서 제외된 기업은 ① 증권·은행·보험업에 속하는 기업, ② 3월, 6월, 9월 결산기업, ③ 측정된 유효법인세율이 0보다 작은 기업, ④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기업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벤처기업은 설립연도가 2년 이상의 기업, 일반중소기업은 설립연도가 2년 이상으로서 도매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으로 제한하여 랜덤하게 표본추출하였으며, 실증분석에 필요한 일반중소기업의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Kirchabiz 회원자료) 및 중소

기업청 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DB로서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법인세 추정)을 활용하였고, 벤처기업의 재무자료는 코스닥협회 공시자료 및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4.1.1 기술적 분석

표본기업 전체에 대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분류한 연도별 세액공제와 감면 건수는 <표 4.1>과 같다.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유형별 연평균 조세부담율에 있어서 벤처기업은 20.09%, 일반중소기업은 23.18%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율이 일반중소기업의 조세부담율에 비해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본기업의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수, 감면금액은 일반중소기업은 기업당 평균 1.76개, 벤처기업은 1.78개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고 있으며, 평균공제액은 일반중소기업은 연평균 39.30백만원, 벤처기업은 49.4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벤처기업은 기업당 평균 2.38개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고 있으며, 평균공제액은 1억 9,487만원으로 나타났다.

<Table 4.1> tax deduction & tax reduction events (unit : events, %, million won)

categories		2010 year	2011 year	2012 year	Toal
number of enterprise	small firms	176	180	191	547
	venture firms	195	207	213	615
rate of tax imposition	small firms	23.25	24.17	24.82	69.54/ 23.18
	venture firms	20.18	20.35	19.73	60.26/ 20.09
number of deduction	small firms	1.59	1.73	1.95	5.27/ 1.76
	venture firms	1.77	1.84	1.72	5.33/ 1.78
number of average deduction	small firms	35.14	40.02	42.73	117.89/ 39.30
	venture firms	37.51	39.24	34.20	148.46/ 49.49

4.1.2 세액공제 및 감면여부에 따른 조세부담율 차이분석

<Table 4.2> difference analysis of tax-bearance rate by deduction benefit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significa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ate of tax imposition (2010년)	enterprise received deduction	21.37	11.34	7.322	0.000
	enterprise unreceived deduction	24.51	13.17		
rate of tax imposition (2011년)	enterprise received deduction	23.19	9.55	8.272	0.000
	enterprise unreceived deduction	25.80	15.93		
rate of tax imposition (2012년)	enterprise received deduction	24.72	8.74	5.729	0.003
	enterprise unreceived deduction	27.12	13.57		

<표 4.2>는 연구가설 1의 검증결과이다. 3개년도 모두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기업의 조세부담율과 받지 못한 기업의 조세부담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감면제도가 조세부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조세정책지원제도가 유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부담율 차이에 대한 분석

<표 4.3>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유형별 연도별 조세부담율의 차이분석 결과이다.

각 연도별로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율의 평균은 2010년에는 일반중소기업 23.25%, 벤처기업 20.18%, 2011년에는 일반중소기업 24.17%, 벤처기업 20.35%, 2012년에는 일반중소기업 24.82%, 벤처기업 19.7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 조세부담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벤처기업이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2012년도에는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위주로 더욱 산업육성정책이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4.3) difference analysis about tax-bearance rate between small & medium firms and venture firms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significant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ate of tax imposition (2010)	small firms	23.25	14.96	3.150	.030***
	venture firms	20.18	17.10		
rate of tax imposition (2011)	small firms	24.17	13.17	4.671	.007***
	venture firms	20.35	15.22		
rate of tax imposition (2012)	small firms	24.82	10.54	3.553	.000
	venture firms	19.73	14.76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5. 결론

그 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자의적인 구분기준에 따라 그룹화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을 일반중소제조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분류한 후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그 실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표본기업은 벤처기업의 경우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 수록된 자료와 코스닥협회에 등록된 공시자료,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상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효성분석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모두 조세부담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도가 조세부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 조세부담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벤처기업이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2012년도에는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육성정책이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 동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금융지원 위주로 지원되고 있었던 바,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R&D기업형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단순화하고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출규모가 작은 소기업,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조세정보가 부족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어도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유형별 실증분석의 결과에서와 같이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등의 조세지원은 그 실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었지만 특히, 청년창업 육성과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므로 벤처기업 육성의 재추진이 필요한 현시점에 맞맞추어 조세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 유형별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의 구분 기준을 약간 초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세의 불공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특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원에 있어 창업연한, 기술가치평가, 펀드형 투자시 차등을 두으로써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벤처창업과 기존 벤처기업의 사기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조세정책상 지원제도로서 더욱 유용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특정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산학연 활동의 강화를 위해 교수,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의 경우 생애주기별(창업, 도약, 성장, 재도전), 성장경로별(벤처확인 유형, 창업자 유형, 업력)로 다르게 하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등 특별지원하는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2014년도에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이 시행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한소득공제가 최대 50%까지 확대되고, 창업 후 벤처기업을 매각해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과세를 연장시켜주고, 기술기업의 M&A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즉 1억 이하 출자와 투자의 경우 70%, 1억 이상 3억 이하는 60%, 3억 이상은 50%와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소벤처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총액과 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분류되는데 투자액의 7%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 10%, 대만 35%의 세액공제율보다 낮아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제3의 시장인 코넥스기업 직접출자에 대한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과세 하도록 했으나 간접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간 차이점을 인식하여 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료만을 분석하였

으므로 향후에는 대기업과 업종별, 벤처기업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거나 R&D 투자비용, 창업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간 비교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매출액과 조세부담율은 경기변동과 국제적 경기흐름, 환율 등 외형적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가설을 적용한 대리변수를 개발하지 않는 면이 있다.

REFERENCE

- [1] Berger, P., "Explicit and Implicit Tax Effect of the R&D Tax Credi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No. 20), 1993
- [2] Cooper, A. C. "Spin off and Technical Entrepreneurship,"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 EM-18, No. 1, Feb. 1971, pp. 2-6
- [3] Dong-Hoon, Kim(2012), "Effectiveness analysis of tax-aid system of venture firms", *Finance and Accounting*, Vol. 12, No. 1, pp. 109-134
- [4] Guenther, 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s and Pre-tax Return : Direct Evidence from the 1981 Accounting and Economics, 1994
- [5] Hong, G. D. Cognitive Load while Learning to Use a Computer Program.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2, No. 9, pp. 151-170, 1999
- [6] Ho-Sung, You(2005), "On the effectiveness study of tax-aid about R&D", Graduate School Myoungji University, master's thesis
- [7] Hyuk-Jun, Song & I-Bae, Kim & Eung-Rak, Oh & Jong-Wook, Choi(2006), "On the Imposition of Tax of Venture Firms.", *Venture Management Study*, Vol. 9, No. 3, pp. 61-80
- [8] Hyung-Soo, Lee(2005), "Effectiveness of tax preferences for venture companies in terms of implicit tax phenomena", Graduate School of Dongkook University, doctorate these
- [9] Hyung-Soo, Lee & Kab-Soo, Kim(2010), "Effectiveness of tax preferences for venture companies in terms

- of implicit tax phenomena", *Tax study*, Vol. 10, No. 3, pp. 239-274
- [10] Jae-Young, Jeong(2003),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ax-aid system of small & medium firms", Graduate School of Dae Jeon University, doctorate thesis
- [11] Jeong-Hwa, Hong & Wan-Hee, Hong & Chang-Soo, Lee(2001), "The study on effectiveness about tax-aid system of small & medium firms ", *accounting information study*, Vol. 16, pp. 233-243
- [12] Jeong-Tae, Seo(2005), "Rational revision direction of tax-aid system of small & medium firms", basic study 04-14,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 [13] Ji-Seung, Song & Young-Hwan, No & Eun-Ju, Choi(2010), "The sugges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venture firm supporting system and the studies on the growing path types of the venture firm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pp. 117-160
- [14] Jin-Soo & Jae-Jin, Kim(2002), " Policy direction for healthy development of venture firm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15] Jin-Soo, Kim & Eun-Joo, Song & Jeong-Hwa, Ma(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ness of small & medium firms range related small & medium firms's tax system", *Tax-law 07-04*,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p. 66-74
- [16] Johns, Christopher, *Principles of Business Taxation: Finance Act 2006*, Elsevier, 2007
- [17] Korea Institute of France(2008), "Expansion direction of tax system's support about venture and small & medium firms in Japanese", weekly financing brief, Vol. 17, No. 3
- [18] Lynn Bollinger, Katherine Hope and James M. Utterback,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is on New Technology Based Firms," *M.I.T.*, Sep. 1983, pp. 1-14
- [19] Man-Woo, Lee & Kyu-Eon, Jeong & Seok-Woo, Jeong(2000), "Improvement direction of tax-aid system about technical development under new international norms", *Tax-law study*, Vol. 2, No. 16, pp. 31-59
- [20] Man-Woo, Lee & Sang-Hwan, No(2002), "The Study on effectiveness of tax-aid system of small and medium firms", *study of small & medium firms*, Vol. 24, No. 3,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pp. 227-245
- [21] Mayer, *Multimedia Learning*.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22] Omer, T. C., K. Molloy, and D. Ziebart,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Dat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3(Spring 1991): pp. 57-72
- [23] Pil-Hyun, Kim(2010), "Support system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small & medium firms i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policy study, 2010-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24] Rosacker, R. E., and R. W. Medtcalfe(1993), *United States Federal Tax policy Surrounding the Investment Tax Credit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nactments, Rate and Repeals*. *Advances in taxation*. 5, pp. 219-246
- [25] Sang-In, Lee(2008), "A study on the tax incentive system of small and venture firms. - focused on Daejeon-Chungcheong area",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26] Seong-Jeong, Kim(2004),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on tax-aid of small & medium enterprises", collection of treatises of social science, Vol. 23, No. 1, Keimyung University pp. 485-509
- [27] Sook-Chan, Ahn(1996), Tax imposition and corporate character,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No. 8, pp. 125-152
- [28] Soon-Sin Lee, *An Analysis of ESL Learners' Discourse Patterns*. Ph.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2000.
- [29] Spooner, G. M.,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s." *National Tax Journal* 39(September 1985): 293-306
- [30] Tae-Keun, Kim · Kui-Sun, Lee(2002), "On the

study tax-benefit of listed companies in KOSDAQ”,
Collection of treatises of social science, Vol. 5,
Soongsil University

[31] Woo-Cheol, Kim(2008), "Comparativeness and
analysis related with investment of mail country's
tax-aid system", Tax-law study 08-11,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p. 70-86

[32] www.korcham.net

[33] www.venture.or.kr

서 병 우(Seo, Byung Woo)



- 1984년 2월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0년 8월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
원(행정학석사)
- 2001년 8월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87년 9월 ~ 2005년 2월 : 개업세
무사, 삼성세무법인 대표이사
- 1997년 3월 ~ 2003년 2월 : 극동정보대학 세무회계과 겸임
교수
- 2005년 3월 ~ 현재 : 신홍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 관심분야 : 세무회계, 세법, 조세정책
- E-Mail : taseo@naver.com

문 승 권(Moon, Seung Kwon)



- 1983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86년 8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1990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1998년 8월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98년 1월 ~ 현재 :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 관심분야 : 재무관리, 조세정책, 보건의료경영
- E-Mail : skmoon38@hanmail.net